

汎 유럽에너지공동체와 유럽에너지현장

– 에너지경제연구원 –

I. 要約

1. EC의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상

◦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상

- '90년 6월(EC 頂上會談) 네덜란드 수상(Ruud Lubbers)에 의하여 제안되었음.
- 이 구상의 내용은 西유럽, 동유럽, 소련을 포괄하는 광역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임.
-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상의 배경
 - EC는 소련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 이용하여 대외 에너지 수입의존도의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음.
 - 소련·東歐 제국은 EC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 환경오염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동서간 냉전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정치적 제약이 완화되고 있음.

2. EC의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추진

- EC는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 ①소련·東歐에서 EC 기업의 시장활동과 투자가 보호되고, ②소련·東歐의 시장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함. EC는 ①기업활동(투자)의 보호장치로서 「유럽에너지 현장」을 제정하고, ②시장기반 정비를 위하여 蘇聯·東歐 원조를 추진함.

(1) 「유럽 에너지 현장」의 제정

◦ 경과

- '90년 6월, EC 정상회담에서 「汎유럽 에너지공동체」추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됨.
- '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이 현장의 제정이 공식 제안됨.
- '90년 12월, EC 정상회담에서 이 현장에 관한 국제회의를 '91년 중 개최하기로 함.
- '91년 2월, EC 위원회에 의하여 이 현장의 골격이 제시됨.
- '91년 7월, 유럽 에너지 현장 예비회의에서 이 현장의 초안이 발표됨.
- '91년 7월, G-7 頂上은 이 현장의 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91년 12월, 이 현장의 최종안이 조인될 예정임.

◦ 주요 내용

- 시장원리 및 무차별 원칙의 적용을 전제로 함.
- 공동체내 모든 기업에게 자유로운 자원의 텁사, 개발, 소유, 취득, 과실의 본국송금 권리 등을 보장함.
- 공동체내 에너지 교역장벽을 제거함(국가별에너지 수송의 장벽 등).
- 공동체내 기술사양을 통일함(특히 전력계통 등).

- 공동체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환경보호, 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협력함.
- 유럽 에너지 현장의 가맹국 범위
 - 예비회의 ('91. 7)의 참여국을 기준으로 볼 때, 非유럽 제국(미국, 캐나다, 日本,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에너지 현장은 가맹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가맹국의 數는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2) EC의 소련·東歐 원조 추진

- EC의 소련·東歐 원조는 경제개혁,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을 촉진하는데 주목적을 둠.
- EC의 대소 원조는 주로 기술지원 형태이며, 지원 대상은 원자력 안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외국기업 투자에 관한 기본 법규 정비 등임. 蘇聯의 石油·가스 분야는 EC의 직접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EC 기업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지원될 전망임.
- EC의 對東歐 원조는 에너지 정책(가격정책 등)의 개선, 에너지 산업 재편, 에너지 이용 효율화, 원전의 안전성 제고, 환경문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둠.

3. 향후 전망

- (1)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
 - 이 구상의 추진 과정(특히 유럽 에너지 현장 제정)에서 非유럽 주요국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EC의 蘇聯·동구 에너지 시장 독점 의도는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東·西유럽 및 소련이 인접한 지리적 조건상 「汎유럽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 등 일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있음. 그 시기는 소련·東歐 개혁(사유화, 투자환경조성 등)의 진척도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판단됨.

(2) EC 전략의 변화 가능성

-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이 EC의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EC는 소련·동구 원조의 부담을 非유럽 제국과 분담하고자 할 것임.
 - EC의 관점에서 「對蘇聯·동구 원조」와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축」은 각각 「투자」와 「투자의 기대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현재의 상황은 EC의 투자비용에 비하여 투자의 기대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EC는 蘇聯·東歐 시장정비에 소요되는 원조 자금 부담을 非유럽 제국과 분담하고자 할 것임.

- 더우기 蘇聯·동구 에너지 시장에서 서구 제국의 既得權 안배 문제가 갱점화 된다면, 「蘇聯·동구 원조에 대한 기여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3) 유럽 에너지 현장의 성격 규정 문제

- 유럽 에너지 현장의 성격은 아직 모호한 상태임. 이 현장의 성격 규정 문제는 향후 중요한 과제로 될 것임. 조속한 시일내에 기업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 에너지 현장의 성격은 「에너지 자원 분야의 투자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논의 과정에서 ①이 현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 ②이 현장을 협력촉진지침으로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이 현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각국간 이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현장 제정이 지연될 수 있음. 이 현장의 성격을 「협력촉진지침」으로 할 경우 투자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음.
- 따라서 유럽 에너지 현장의 성격을 「기업의 시장활동(투자)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 하고, 국가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추후 개별협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이 현장은 주요 선진국(G-7)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이 현장을 향후 국제협정으로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반으로 될 수 있음.

4. 示唆點

◦ 전제

유럽 에너지 현장의 가맹 범위는 유럽 이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 현장의 성격은 국제협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이 현장의 내용은 蘇聯·東歐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게準用될 수 있음. 이를 전체로 할 때 다음과 같은 示

峻點을 도출할 수 있음.

- 韓國이 이 현장의 가맹국으로 되는 경우, 또는 非加盟國으로서 이 현장의 준수를 요구받을 경우 韓國은 다음 諸事項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외국기업의 국내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취득, 소유 등에 관한 권리 보장.
 - 에너지 상품의 수입 장벽의 제거.
 - 국내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게 과실의 본국 송금, 외자의 도입·사용등에 관한 권리 보장.
 - 다른 가맹국(日本 등)이 蘇聯產 에너지를 수송하는데 韓國 영토를 경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협조.
 - 국내 에너지 부문 기술사양 및 안전적부 검사체제 등의 국제화.
 - 건강보호, 환경보호, 소비자권익, 노동자권익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
- 유럽 에너지 현장 가맹에 관한 日本의 의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日本의 가맹 의도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음. 다만, 日本의 입장과 諸狀況에 비추어 볼 때, 日本은 향후 이 현장 가맹을 통하여 국제 에너지 市場(특히 蘇聯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分析됨.
 - 日本의 입장
 - 이 현장의 주안점을 「蘇聯·東歐 제국의 세계 에너지 시장 편입」에 둘 것.
 - 이 현장의 가맹국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의 이행에 따른 이익을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日本의 가맹 의도
 - 蘇聯(東歐)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관한 유럽의 독주를 견제하고 日本의 참여 기회를 확보함.
 - 蘇聯(東歐) 에너지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장함.
 - 日本의 에너지 산업은 향후 유럽 에너지 현장의 법적 효력과 자본·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東北亞 지역에서 에너지의 생산 및 수송에 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음.
 - 日本은 蘇聯을 생산지로 하고 韓國 및 아시아

제국을 소비지로 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의 견고한 활동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임.

- 日本은 北韓(蘇聯 또는 中國)에 정유공장을 설립하고 蘇聯產 원유를 이용, 생산한 석유제품을 韓國 등 아시아 제국에게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日本은 蘇聯產 에너지 자원의 자국 수송에 있어, 韓國을 경유하는 수송상의 협조를 韓國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이같은 日本의 요청에 있어 유럽 에너지 현장은 국제법상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
- 韓國의 대처 방안
 - 이 현장에 의하여 에너지의 국제 교역 및 투자 활동이 촉진되면, 에너지 산업간 국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비하여 韓國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향후 韓半島에 대한 日本(外國) 에너지 산업의 투자가 증대될 경우, 이것이 통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 특히 남북한간 에너지 관련 교역 및 투자의 성격 규정 문제,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에 대응하는 南北韓 공동 전략의 수립 가능성 모색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향후 유럽 에너지 현장의 제정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임. 특히 이 현장이 韓國의 對蘇 에너지 관련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현장 제정에 관한 추이 여하에 따라서는 韓國의 가맹 여부, 이 현장 제정에 관한 韩國의 공식 입장 표명, 이 현장 제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임.

II. EC의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추진 내용

1. 「유럽 에너지 현장」의 제정

- (1)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상의 제안」('90. 6. 25, EC 정상회담)
 - '90. 6. 25, Dublin, EC 정상회담에서 네덜란드 수상(Ruud Lubbers)이 제안함.
 -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상」에 관한 네덜란드 제

안의 골자.

- 西유럽과 東유럽(蘇聯 포함)을 포괄하는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 구축.
-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의 구축 목적
 - 東·西유럽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에 기여.
 - 유럽의 域外(특히 中東) 에너지에 대한 의존 심화를 방지.
- 추진 방향에 관한 제안
 - 목적, 활동 영역, 정치적 책임 등을 규정하는 현장의 제정을 고려 할 수 있음.

(2) 유럽 에너지 현장 제정의 공식화

('90. 11. 19, CSCE)

- '90. 11. 19~21, 파리, 유럽안보협력회의¹⁾에서 네덜란드 수상과 EC 위원장²⁾이 유럽 에너지 현장의 제정을 공식 제안함.

◦ 參加國 : 34個國³⁾

◦ 同 會議의 決定 事項

- 유럽 에너지 憲章의 制定에 관한 EC 委員長과 네덜란드 首相의 구상을 수용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EC가 담당함.
- 첫 단계로 EC 정상회담을 91년 12월 중순에 로마에서 개최하기로 함.

(3) 對蘇聯·東歐 원조의 구체화

('90. 12. 15, EC 정상회담)

- '90. 12. 15, 로마, EC 정상회담에서 EC 수뇌들은 유럽 에너지 현장에 관한 국제회의를 1991년 중 개최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EC 위원회에게 요구함. 또한 蘇聯 및 東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

◦ 유럽 에너지 현장 관련 결정 사항

- EC 위원회는 유럽 에너지 현장 및 프로젝트의 정서의 초안을 작성, 제출할 것.
- 미국과 캐나다⁴⁾는 유럽 에너지 현장의 준수하에 東유럽과 蘇聯에 대한 기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소한 첫 단계에서는 배제되어야 함.
- 별도의 전담 사무국을 설치함.

◦ EC의 對蘇 지원

- 소련의 에너지·운수분야에 대한 기술원조를 '91년 4억 ECU, '92년 6억 ECU로 결정. 기타 7억 5천만 ECU의 긴급 식료원조.

- 총지원액 중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5,000만 ECU 투입.

· 原子力 안전.

· 에너지 절약.

· 타당성 연구 및 훈련.

- 石油·가스 부문은 자원 대상에서 제외됨. 石油 및 가스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에서 맡기로 함.

◦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한 긴급 원조 결정.

- 원조액 : 1억 ECU.

- 동구 제국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상황이 가장 긴급한 것으로 판단함. 동절기에 필요한 에너지 원조액은 1억 5천만 ECU(2억 5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기타 東유럽 제국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타 기구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봄.

(4) 유럽 에너지 현장 초안 채택

('91. 2. 13, EC 위원회)

- '91. 2. 13, EC 위원회는 유럽 에너지 현장의 초안을 채택, 이 현장의 골격이 제시됨.

◦ 주요 내용

- 목적 : 汎유럽 에너지 공동체의 실현.

· 에너지 안정 공급력의 강화.

· 에너지 관련 활동 보장.

- 에너지 협력 : 시장원리를 기조로 하며, 프로젝트의 목표를 항구적 이윤추구에 둠.

- 자원 접근에 필요한 諸要綱 : 탐사, 개발, 소유, 취득 등에 관한 투명성 및 무차별 원칙.

- 투자보증 : 과실의 본국 송금 등에 관한 권리 등.

- 무역장벽 제거 : 수송상 장애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

- 국제 수송망의 개발 : 기존 수송시설의 연계, 타 이용자에 대한 개방.

- 기술, 기술혁신 등에 관한 협력.

- 프로젝트에 관한 개별협정

· 각 프로젝트에 관한 개별협정은 가맹국 및 유럽 공동체에 의하여 결정됨.

1) 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2) Jacques Delors.

3) 알바니아를 제외한 東유럽국, 미국, 캐나다 등.

4) 兩國은 CSCE의 회원국임.

- 이 개별협정을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상업적 계약에 있어 법적 규준으로 함.
- 이 개별협정의 내용은 구체적 기간, 활동 계획, 금융 및 운영에 관한 제사항을 포함함.
- 이 개별협정의 대상으로서 유력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①石油 생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송, 정제 설비 현대화.
 - ②天然가스의 생산 및 수송.
 - ③clean coal technology.
 - ④발전설비 현대화 및 전력계통의 연계.
 - ⑤효율적 에너지 이용.
 - ⑥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의 촉진.
- 쟁점사항(참여국의 범위에 관한 이견)
 - 프랑스 등 : 유럽 제국으로 한정.
 - 네덜란드 등 : 미국, 캐나다를 포함.
 - 유럽 남부 제국 : 北아프리카, 中東 등을 포함.
- (5) 유럽 에너지 현장의 최종안 작성 계획 결정 ('91. 7. 15, 예비회의)
 - '91. 7. 15~17, Brussels, 유럽 에너지 현장 예비 회의에서 유럽 에너지 현장 초안이 발표되고, 추후 일정이 결정됨.
 - 유럽 에너지 현장 예비회의 참여국
 - 공식 참가국 : 全유럽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5개국.
 - 옵저버 참가국 :
 - 北아프리카 · 中東 9개국 :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등.
 - 국제기구 : IEA, OECD, World Bank, IAEA, EIB, EBRD, ECE/UN 등.
 - 주요 의제
 - 蘇聯의 石油 · 가스산업(재건)에 필요한 제조치.
 - 유럽 에너지憲章의 성격 규정에 관한 논란.
 - 양대 입장 :
 - ①법적 강제성 부여할 것인지,
 - ②또는 협력촉진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할 것 인지의 여부.
 - 문제점 :

- ①법적 강제성 부여할 경우 :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논의가 지연될 수 있음.
- ②협력촉진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할 경우 : 투자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음.
- 유럽 에너지 현장 최종안 작성 관련 사항
 - 5個 實務 작업단 구성
 - ①DC XVII⁵⁾ : 유럽 에너지현장 최종 문안 작성 (既活動).
 - ②영국 : 유럽 에너지현장의 편제(조직 · 기구)에 관한 사항(既 활동).
 - ③헝가리 : 에너지 효율 및 환경.
 - ④노르웨이 : 石油, 천연가스.
 - ⑤캐나다 : 원자력 산업.
 - 협의 사무국(*the Conference Bureau*) 설치
 - 역할 : 5個 실무 작업단의 총괄, 조정.
 - 국장 : 예비회의 의장(Charles Ruttan)⁶⁾
 - 부국장 : 2名(蘇聯, 포르투갈 각 1名씩)
 - 일정
 - '91년 12월 中旬까지 유럽 에너지현장의 최종안에署名하기로 함('91. 12. 16~17, 해이 그, EC 각료회의에서 최종안 서명 예상).
- 참여국의 공통인식
 - 西方 제국 기업의 對蘇 투자(石油 · 가스產業)에 선행하여, 蘇聯측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蘇聯의 稅制, 기타 복잡한 제요인이 해소된다면, 서방 기업의 대소 투자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전망
 - 蘇聯의 石油 · 가스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여하에 따라 외국 석유 · 가스회사와 금융기관의 對蘇 투자의 촉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
- (6) 유럽 에너지 현장에 대한 G-7의 支持 ('91. 7. 15, G-7 정상회담)
 - '91. 7. 15, 런던, G-7 정상회담에서 G-7은 유럽

5) 第17總局, EC의 에너지 문제를 담당.

6) 前 EC 常任 네덜란드 代表.

에너지 현장에 대하여 강한 지지를 표명함.

○ 내용

- G-7은 가맹국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의 기초 위에서, 유럽 에너지 현장을 수립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의 발기에 참여하고자 함.
- 그目的是 ①에너지의 자유무역 촉진, ②에너지 공급의 안정, ③환경보호, ④中·東유럽 및 蘇聯의 경제개혁 지원, ⑤상업적 에너지 투자 등에 대하여 무차별한 제도를 창출하려는 것임.

2. EC의 對東歐 원조 추진

(1) EC 위원회의 對東歐 프로젝트 승인

- EC 위원회는 Phare 프로그램에 의거, 22개의 對東歐 원조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음.
-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3억3천9백만 ECU이며, 대상국가는 폴란드, 평가리,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임.
- 이중 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리 : 5백만 ECU.
 - 체코 : 5백만 ECU.
 - 에너지 부문 재편, 가격 메커니즘 등 에너지 정책 관련.
 - 3개 지역을 선정, 건물 및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에 관한 프로젝트 등.
 - 루마니아 : 25만 ECU.
 - 에너지 관련 기술 지원.
 - 불가리아 : 1,180만 ECU.
 - 原電設備의 안전성 제고.
 - 原電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 電力대체 관련 연구.
 - 환경분야.
 - 폴란드
 - 국영기업의 재편, 국가독점 해체 등 : 5,000만 ECU.
 - 2차 환경 프로그램 : 3,000만 ECU.
- EC 위원회의 對蘇 기술지원 종합계획 승인
 - EC 위원회는 蘇聯에 대한 기술지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음.
 - 기술지원의 형태로서 4억 ECU 규모임.

- 우선 지원분야는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임.

- 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대책, 경제 개혁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1억 ECU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 안전.

-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외국 기업의 투자에 관한 기본 법규의 정비.

- 炭化水素系 에너지 및 전력.

(3) EC 에너지 담당總局의 개편

- 對東歐 에너지 협력의 전담 부서를 DGXVII(EC의 에너지 담당總局)下에 설치함.

- 機能 : 東유럽 6개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함.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설립

- 目的 : 東유럽 제국의 경제개혁 지원.

- 東歐 제국에 대한 장기 저리의 개발자금 융자.

- 對東歐 투자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원조.

- 자본금 : 100억 ECU.

○ 자본금 구성

- EC 회원국 → 45.0%

- EIB, 공동체 → 6.0%

- 미국 → 10.0%

- 일본 → 8.5%

- 지원 프로젝트 수혜자 → 13.5%

- 기타 국가의 기부 → 17.0%

(5) EIB의 對東歐 차관 공여

- '91년 4월, EIB 이사회는 동구 경제개혁 지원책의 일환으로 對東歐 차관 공여를 결정하였음.

- 지원액 : 7억 ECU.

- 지원 대상국 :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 최근 EIB는 루마니아 發電부문에 대한 차관 공여를 결정하였음.

- 금액 : 2,500만 ECU.

- 지원대상 : Renel 전력사업체.

- 차관 용도 : 발전설비의 보수, 전기사업의 투자 타당성 연구 등.

(6) EC의 Twinning 프로그램 수립

- EC 위원회는 Twinning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

- 목적

- 東·西유럽의 原電 소유자, 운영자들의 모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東歐諸國과 효과적인 원전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립함.
 -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유럽 에너지 현장에 반영 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계의 반응
 - 유럽 공동체의 原電업체들은 *Twinning Program Engineering Group*을 결성, 東유럽 제국의 原電시설에 대한 支援준비를 추진함.
- (7) EC의 Euratom-蘇聯間 원자력 관련 협정 추진 승인
- EC 총무회의는 원자력 관련 3개 분야에 관한 유럽 원자력공동체 (Euratom) 와 蘇聯의 협정 추진을 승인함.
 - 승인된 3개 분야
 - 제어 핵융합.
 - 원자력 안전.
 - 핵물질 교류.

III. 유럽 에너지 현장의 주요 내용

1. 목적

- 가맹국은 무차별 원칙과 시장지향적 가격결정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欧유럽 광역에너지 시장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이를 위하여 다음 제분야의 활동에 합의함.

(1) 에너지 교역의 확대

- 에너지 제품의 거래에 관한 시장기능 자유화.
-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자원 주권을 고려하여 장기적 이익의 상업적 기준에 입각한 자원개발.
- 에너지, 에너지관련 장비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기술적·행정적·기타 차별 장벽의 제거.
- 에너지의 생산·수송·이용 등과 관련된 설비와 서비스의 합리화(현대화, 개선 등).
- 사회간접시설 (*Infrastructure*) 개발.

(2) 에너지 분야의 협력·조정

- 기술·경제 데이터의 이용.
- 자원 개발의 허가에 관한 모든 법규의 체계화.
- 에너지 제품, 설비의 기술 사양, 안전규칙 등을

- 격상, 통일함.
 - 연구, 기술개발, 실증 프로젝트 등.
- (3) 에너지의 最適 및 환경보호
- 환경상 이점을 갖는 에너지원의 장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이용 청정화 기술의 개발.
 - 시장 지향적 가격형성을 토대로 하여 경제적, 효율적, 합리적 에너지 이용이 가능한 여건의 조성.
 -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 및 체제의 마련.
 -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

2. 실행

- 가맹국은 上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 관한 협력에 동의함. 가맹국은 欧유럽 에너지 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제분야의 협력 활동에 합의함.
 -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자원개발.
 - 투자보호.
 - 교역 증대.
 - 기술 仕様 및 안전규칙.
 - 연구,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환경보호.

(1)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자원개발

 - 효과적인 자원개발은 欧유럽 에너지 시장 수립에 필요조건임. 가맹국은 기업의 資源接近 및 投資를 촉진함.
 - 가맹국은 자원의 탐사·개발·취득·소유에 관한 규정의 투명성, 무차별성을 보장하며 이를 公式化 할 필요가 있음.
 - 이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함.
 - 시장의 모든 자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개발에 대한 모든 차별과 장벽을 제거함.
 - 자원의 개발,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과세, 자원 소유권 등에 관한 차별규정 적용을 배제함.

(2) 투자보호

 - 가맹국은 투자, 교역에 관한 기존 국제법규의 적용을 보장함.
 - 가맹국은 투자보호, 투자촉진에 관하여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준함.

- 가맹국은 과실의 본국송금 권리 및 필요 兑換貨幣 (*convertible currency*)의 調達·사용에 관한 권리 를 보장함. 각 가맹국은 에너지 문제의 투명성 보 증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기업회계규정을 조정함.

(3) 교역 증대

- 가맹국은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를 위하여, 에너지 제품·장비·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 고 自國 영토를 경유하는 수송에 협조함.
- 국제 수송시설의 개발과 상호 연계를 위하여 시설 의 운영, 설비 등에 관한 기술仕樣을 통일함(특히 전력계통과 관련).

(4) 技術仕様 및 안전규칙

- 가맹국은 技術仕様, 안전, 안전적부 검사체제, 건 강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권익, 노동자 권익 등에 관한 기존 국제협약을 존중함.
- 가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技術仕様 및 공동 법규를 공식화함.

(5) 연구, 기술개발, 기술혁신

- 가맹국은 기술개발·기술혁신 활동의 협력, 기술 교류 등을 촉진하며, 다음 사항을 장려함.
 - R & D 활동 참여.
 - 시험 프로젝트와 실증 프로젝트 준비.
 - 신기술의 응용.
 - KNOW-HOW 및 신기술의 보급.
 - 정보제공 및 훈련활동 등.

(6)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환경보호

- 에너지관련 기술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노하우 교환체제 확립.
- 에너지 프로젝트 중 유망투자에 대한 기본적 제여 건 정립. 환경보호 수단으로써 시장원리의 적용 확대.

3. 개별협정

- 가맹국은 현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제분 야의 협력 증대 방안을 협의하며, 개별 협정을 추 진함.
 - 원자력 에너지 및 이 분야의 안전성 개선.
 - 탐광, 채굴 및 *clean coal technology*.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

- 신재생 에너지源의 개발.
- 천연가스의 탐사, 이용, 고압 파이프라인을 통 한 수송.
- 발전소의 현대화, 전력설비의 연계, 고압전선 에 의한 송전.
- 석유탐사, 석유의 이용 및 수송, 정제시설의 현 대화.
- 기술이전, 기술혁신 촉진.

- 가맹국은 이들 분야의 세부내용 및 법률적 제사항 의 공식화를 위하여 작업단을 구성함. 작업단은 6개월 이내에 同件에 관한 답신서를 제출하도록 함.

IV. 부록

1. EC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로마에서 열린 EC 정상회담('90.12.15)은 정치 통합의 실현, 經濟通貨同盟의 촉진, 소련 및 동구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음.
 - 초점이 된 정치통합·통화동맹 등은 각 가맹국에서 이에 필요한 법률·조약을 1992년 말까지 비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속 등의 준비는 정부간회의(IGC)에 맡김.
 - 12개국은 이에 동의, 同日 오후부터 제1회 정부 간회의가 열림. 소련과의 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문화 등 광범위한 협력·협정을 '91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였음.
- 한편, 정상회담은 걸프危機 등에 관하여 4개의 정치선언을 채택하였음. 그 하나로서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국제적인「中東平和會議」의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음.
- 정치통합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은 정치통합을 「유럽안정의 기둥」으로 규정하고, 외교·안전보장정책의 공동화 및 EC의 권한강화 등을 고려하여 그 실현 준비를 IGC에 요구하였음.
 - 외교·안보면에서 각료이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 공통정책이 결정되고, 정책 실행면에서 EC 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며, 방위면에서 西歐同盟 (WEC: 서구제국의 군사협의기구)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對蘇지원에 있어 총액 7억5천만 ECU(약 10억 달러)의 긴급 식량원조 등을 결정, 고르바초프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
- 그내역은 무상원조 1/3, 차관공여 2/3임. 한편, 기술지원은 '91년에 4억 ECU, '92년에 6억 ECU, 합계 10억 ECU(약 14억 달러)로 결정되었음.
 - 對蘇 지원분야는 에너지와 통신, 교통 등으로서 사회기반정비가 중시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련하여 소련의 石油·天然가스 자원 개발을 EC가 지원하고, 全유럽이 하나로 되는 에너지 공급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유럽 에너지 현장」 구상을 토의하는 국제회의를 '91년에 개최할 것이 제안되었음.
 - EC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골자
 - 정치통합에 관한 정부간회의에서는 ①유럽회의의 권한강화, ②외교·안보정책의 공동화, 유럽시민권의 확립, ③환경·에너지 등(EC의 활동분야 확대)을 검토한다.
 - 검토는 경제통화동맹의 정부간회의와 병행하여 행하고, '92년 말까지 비준할 수 있도록 작업을 서두른다.
 - 소련에 대하여, ①7억5천만 ECU의 긴급 식료원조, ②에너지·운수 등의 분야에 대한 '91년 4억 ECU, '92년 6억 ECU의 기술원조를 행한다.
 - 특히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91년에 국제회의를 개최, 「汎유럽에너지현장」을 검토한다.
 -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1억 ECU의 긴급 원조를 실시한다.
 - 신라운드 교섭의 타개에는 참가국 전원이 건설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월 말까지 균형된 합의를 지향하는 EC 위원회에게 노력을 구한다.

2. G-7 정상회담의 경제선언 요지 ('91. 7. 15)

(1) 巨視 경제정책

세계 경제의 성장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걸프 사태가 종결됨에 따라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하여, 중기적 戰略을 토대로 하는 경제운영의 유지를 확인한다. 세계적 투자수요의 증가에 비추어 저축 증대 및 재정적자의 삭감이 필요하다.

(2) 다각적 무역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91년 말까지 조기 타결하는 것이 세계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농업에 관하여는 국내로부터의 지지, 시장 접근 및 수출 경쟁을, 各分野에 있어서는 구속력 있는 공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섭한다. 무역의 관심사항에 관하여도 고려 한다.

(3) 에너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중단과 시장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기적으로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와 환경 대책이 중요하다. 걸프事態의 교훈에 비추어 에너지 시장 자유화, 에너지 투자 장벽의 제거가 더욱 필요하다. 걸프 사태의 결과 산유국과 소비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兩者間 접촉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C 위원회는 유럽 에너지 현장을 제안하였다.

(4) 對東歐 지원

東歐제국의 개혁 성공 여부는 東歐의 자조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시장경제로의 移行을 향한 제개혁을 가능한 한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西側 제국은 東유럽 지원국회의 (G-24),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주요채권국회의 (Paris Club)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東歐의 개혁을 지원한다. 西側은 그 시장을 개방하여, 東歐 제국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것을 촉진한다. 효과적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간, 국제기구간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對蘇 지원

IMF 등 4개 국제기관이 작성한 蘇聯 경제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소련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에너지, 환경, 통

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다. 소련의 경제 상황은 작년 아래 악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시장경제를 향한 소련의 개혁을 지원, 장려 한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영국으로 초빙하여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은 반드시 금융지원의 결정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4個 국제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소련 경제 보고서를 현황에 맞추어 간신히 것을 지시한다. 기술지원의 여부는 연방만이 아닌 지방공화국에 대하여도 초점을 둔다. 소련의 개혁이 지속될 경우 원조 조정은 IMF에서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6) 中東

中東의 부흥과 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IMF와 세계은행이 관여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域内에서 조달되도록 한다. 西側과의 共同프로젝트, 민간투자의 장려, 무역 자유화 촉진 등이 중요하다. 역내 경제협력이 확대됨으로써 정치·안전보장에 공헌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7) 개발도상국 경제

開途國의 성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자금 창출이 필요하다. 最貧國에 대하여는 정부개발원조(ODA)가 필요하다. 원조와 관련하여 군사비를 과도하게支出하지 말 것. 민주주의, 인권존중, 부패없는 정부, 法에 의한 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진 정부의 원칙을 개도국에게 장려

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의 원조에 대하여 강력히 공약하고자 한다. 민간채무의 삭감을 환영한다. 폴란드, 이집트의 公的 채무의 삭감을 지지하지만, 특례로 간주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요채권국회의의 합의 내용에 유의한다.

(8) 환경

'92년 국제연합 지구환경개발회의(UNCED) 성공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동, 삼림, 생물학적 다양성 등의 분야에서 작업의 진척을 기대한다. 지구온난화 방지조약은 UNCED 개최시까지 결정되도록 한다. 삼림의 관리, 보호, 개발에 관한 국제적 공약이 달성되도록 한다.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결정은 UNCED下에서 논의되도록 한다. 환경 긴급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의 강화, 해양 환경보호,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의 활동 강화를 지지한다.

(9) 마약

90년 휴스턴 정상회담 이후 마약 대책에 큰 관심이 있었다. 런던 정상회담에서는 국제협력 강화, 해로인 문제의 대응, 수요 삭감대책의 강화, 국제유통의 단속 강화등을 호소한다.

(10) 이민

이민 압력이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민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이민문제에 관한 OECD의 작업 강화를 지지하며, 향후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

□용어해설□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철도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없으면 생산활동이 불가능해지거나 크게 제약을 받는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고속도로 체증, 항만적체등으로 생산 및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항만 철도·도로시설등이 부족해서 원료나 제품의 원활한 수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산에 도움을 주거나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

은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SOC(Social Overhead Capital)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과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징이다.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거나 민간에 맡기더라도 재원을 보조해주는게 보통이다.

정부는 대통령직속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을 설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 때문이다.